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853)

관세청고시 제83-393호 ('83. 1. 15)	관세청고시 제2000- 43호 ('00. 12. 22)
관세청고시 제85-410호 ('85. 8. 23)	관세청고시 제2001- 11호 ('01. 2. 16)
관세청고시 제86-426호 ('86. 2. 10)	관세청고시 제2001- 31호 ('01. 6. 20)
관세청고시 제86-438호 ('86. 6. 9)	관세청고시 제2004- 44호 ('04. 10. 27)
관세청고시 제86-454호 ('87. 1. 1)	관세청고시 제2005- 42호 ('05. 12. 27)
관세청고시 제88-508호 ('88. 1. 20)	관세청고시 제2006- 25호 ('06. 6. 28)
관세청고시 제88-512호 ('88. 2. 8)	관세청고시 제2008- 5호 ('08. 1. 15)
관세청고시 제88-527호 ('88. 6. 27)	관세청고시 제2008- 26호 ('08. 8. 21)
관세청고시 제88-547호 ('88. 11. 28)	관세청고시 제2009- 47호 ('09. 8. 20)
관세청고시 제89-566호 ('89. 3. 9)	관세청고시 제2009-120호 ('09. 12. 30)
관세청고시 제89-597호 ('89. 10. 12)	관세청고시 제2010- 29호 ('10. 2. 10)
관세청고시 제89-599호 ('89. 10. 25)	관세청고시 제2010-106호 ('10. 7. 16)
관세청고시 제89-607호 ('89. 12. 15)	관세청고시 제2011- 14호 ('11. 3. 30)
관세청고시 제90-640호 ('90. 7. 11)	관세청고시 제2011- 47호 ('11. 11. 30)
관세청고시 제90-657호 ('90. 12. 28)	관세청고시 제2012- 36호 ('12. 10. 14)
관세청고시 제91-688호 ('91. 6. 21)	관세청고시 제2014- 35호 ('14. 3. 12)
관세청고시 제92-732호 ('92. 5. 19)	관세청고시 제2014-109호 ('14. 11. 20)
관세청고시 제92-762호 ('92. 12. 24)	관세청고시 제2015- 06호 ('15. 1. 27)
관세청고시 제93-785호 ('93. 4. 17)	관세청고시 제2015- 23호 ('15. 7. 1)
관세청고시 제94-852호 ('94. 1. 11)	관세청고시 제2016- 47호 ('16. 8. 12)
관세청고시 제94-878호 ('94. 5. 23)	관세청고시 제2017- 75호 ('17. 12. 15)
관세청고시 제95-917호 ('95. 2. 28)	관세청고시 제2018- 37호 ('18. 10. 2)
관세청고시 제96- 34호 ('96. 6. 27)	관세청고시 제2019- 23호 ('19. 5. 31)
관세청고시 제97- 42호 ('97. 11. 15)	관세청고시 제2019- 54호 ('19. 12. 5)
관세청고시 제97- 43호 ('97. 11. 29)	관세청고시 제2020- 23호 ('20. 7. 1)
관세청고시 제98- 14호 ('98. 4. 13)	관세청고시 제2020- 35호 ('20. 10. 6)
관세청고시 제98- 49호 ('98. 9. 30)	관세청고시 제2021- 76호 ('21. 12. 28)
관세청고시 제98- 78호 ('98. 12. 11)	관세청고시 제2022- 12호 ('22. 3. 18)
관세청고시 제99- 28호 ('99. 07. 06)	관세청고시 제2022- 45호 ('22. 9. 6)
관세청고시 제99- 53호 ('99. 12. 24)	관세청고시 제2023- 00호 ('23. 1. 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교관면세점”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2. “출국장면세점”이란 출국장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3. “입국장면세점”이란 법 제196조제2항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공항,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4. “시내면세점”이란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5. “판매장”이란 판매물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장소인 매장·계단·에스컬레이터·화장실·사무실 등 물품판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용시설을 말한다.
6. “인도장”이란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및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 가. 출국장 보세구역내 설치한 장소
 - 나. 외국무역선 및 외국여객선박의 선내
 - 다. 통관우체국내 세관통관장소
 - 라. 항공화물탑승 보세구역
 - 마.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
 - 바. 입국장 보세구역내 설치한 장소(이하 “입국장 인도장”이라 한다)
7. “출국장”이란 공항·항만 보세구역 내에서 출국인 또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이 항공기 또는 선박을 탑승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를 말한다.
8. “입국장”이란 공항·항만 보세구역 내에서 입국인이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를 말한다.
9. “운영인”이란 법 제174조,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10. “출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말한다.
11. “입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말한다.
1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거주지 국가의 영주권(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체류 사증)이나 이민사증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여권(PR)을 소지한 자
 - 다.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로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영주할 목적인 재외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부 등

본을 소지한 자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자

13. “시설관리권자”란 공항·항만의 출·입국장 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4. “보세판매장 협의단체”란 운영인의 공정한 상거래질서와 기업운리를 자율적으로 확립하고 보세판매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5. “통합물류창고”란 보세판매장 협의단체장이 회원사의 원활한 보세화물관리와 물류지원을 위하여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보관창고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곳을 말한다.
16. “사이버몰”이란 「관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제2장 운영인의 의무 및 판매물품 반출입 절차

제3조(운영인의 의무) ①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해당 보세판매장에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수입하여 내수판매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판매물품을 진열·판매하는 때에는 상표단위별 진열장소의 면적은 매장면적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이 보세판매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인정하는 때는 제외한다.

④ 운영인이 외화로 표시된 물품을 표시된 외화이외의 통화로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날의 전일(최종 고시한 날을 말한다)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2. 당일 적용하는 환율을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버린 후,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
3. 당일 적용환율을 정문입구 또는 구매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제11조의 전자상거래에 의한 판매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⑤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팸플릿,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1.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물품의 구매한도액,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한도액 및 면세한도액의 혼동방지
2.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의 원칙적인 국내반입 제한(입국장면세점 판매물

품 및 입국장 인도장 인도 물품은 제외한다)

3. 면세물품의 교환·환불절차 및 유의사항

4. 현장인도 받은 내국물품의 외국반출 의무

5. 그 밖에 해외통관정보 등 세관장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5항의 게시판은 해당 면세점의 정문, 안내데스크, 계산대, 인기품목 매장 등 구매자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매장면적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2,000㎡ 초과: 5개 이상
2. 1,000㎡ 초과, 2,000㎡ 이하: 4개 이상
3. 100㎡ 초과, 1,000㎡ 이하: 3개 이상
4. 100㎡ 이하: 1개

⑦ 운영인은 상거래상의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판매가격 표시제를 엄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대고객, 재고상품 등에 대한 할인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동등한 고객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거나, 할인품목과 할인율을 매장에 게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⑧ 운영인은 해당 월의 보세판매장의 업무사항(별지 제3호 및 제3호의2에서 제3호의6서식)을 다음 달 7일까지 보세판매장 반출입물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재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 근무하는 소속직원과 다른 법인 등에 소속되어 판매물품의 판촉·물류·사무 등을 위하여 근무하는 직원(이하 “판촉사원 등”이라 한다)의 월별 현황(별지 제3호의7서식)을 다음 달 7일까지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촉사원 등은 운영인의 사용인으로 본다.

⑩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 근무하는 소속직원과 판촉사원 등이 제2조제10호의 협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사전에 협의단체장이 교육계획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 계획 범위 내)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⑪ 운영인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1조에 따른 수용능력증감 등의 공사를 하려는 때에는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⑫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여권 또는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 외 세관장이 인정하는 신원확인방법(이하 “여권등”이라 한다)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제4조(판매대상 물품) ① 운영인이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의5와 같다.

② 출국장면세점은 국산 가전제품 중 여행자의 휴대반출이 곤란하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쿠폰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쿠폰으로 판매한 상품은 관할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 수리후 선적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자 및 구매총액) ① 외교관면세점에서는 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주한외교관 및 외국공무원에 한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출국장면세점과 시내면세점에서는 출국인 및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 한정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 입국장면세점에서는 입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운영인이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9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야 한다.

⑤ 운영인은 입국인에게 규칙 제69조의4제1항에 따라 미화 800달러 이하의 구매 한도 범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술·담배·향수는 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 면세범위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⑥ 운영인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구매자의 출입국 여부 및 구매총액(입국장면세점 운영인에게만 적용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명의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용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 ① 운영인은 보세판매장 판매용물품을 보관창고(통합물류창고 또는 지정장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반입한 후 매장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인이 사전에 세관장에게 반입전 판매를 신청한 물품은 판매(주문 또는 결제를 포함한다) 이후에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에 반입할 수 있다.

② 운영인은 보세운송된 물품을 보관창고에 반입하는 때에는 전자문서 방식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입신고하여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보고는 반입신고로 갈음한다.

③ 운영인은 보관창고에 반입된 물품을 7근무일 이내에 관할세관장에게 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기간 내에 반입검사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반입검사 신청기간 연장신청(별지 제1호의2서식)을 해야 하며, 세관장은 연장신청사유 등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서 기간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반입검사신청은 운영인 또는 운영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첨부서류 없이 전자문서(수입신고 양식 사용)를 수입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은 반입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입신고서 사본(물품반입시 전자문서로 반입신고한 때에는 생략함)

2. 매매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3. 선하증권 사본

4. 송품장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적체화물목록 제출물품 및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보세운송 반입물품을 제외)은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내국물품

2. 제16조에 따른 양수물품

3. 제18조에 따른 미인도물품

4. 제19조에 따른 반품 및 교환물품

⑥ 세관장은 제4항 단서에 따른 서류제출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1. 품명, 규격, 수량

2. 적용세번 및 신고가격

3. 반입검사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현품과의 상이여부, 파손 등 하자발생 여부 및 그 사유

4. 그 밖에 현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⑦ 세관장이 제6항에 따라 검사·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사항을 통보한다.

1. 반입검사신청서에 별표 2의 반입검사신청확인 고무도장을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2. 관세사가 반입검사신청서 확인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세관기계란에 별표 3의 반입검사P/L신청확인필증 고무도장과 별표 4의 관세사인장을 날인한 후 교부

3. 제5항 각 호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의 경우 전자문서로 확인사항 통보

⑧ 세관장은 업체의 성실도, 물품의 우범도 등을 고려하여 세관별 수입C/S 검사비율 범위내에서 자체 검사비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⑨ 운영인은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제14조제2항에 따른 영업개시일 이후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영업개시일 전이라도 감시단속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보세판매장에 물품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7조(내국물품의 반출입절차) ① 운영인이 내국물품을 보세판매장에 반입한 때에

는 제6조제5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환급대상내국물품을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자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 제5장제1절에 따라 환급대상내국물품의 보세판매장 반입확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조제5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인이 제1항에 따라 반입된 내국물품을 변질, 손상, 판매부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하려는 때에는 해당 물품을 보관창고에 구분하여 장치한 후 세관장에게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 환급대상내국물품: 환급고시 제5장제3절에 따른 정정·취하 승인서. 다만, 같은 규정에 따라 정정·취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 또는 반송의 절차에 의한다.

2. 제1호이외의 내국물품: 판매물품반출승인서

④ 운영인은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물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에 반출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며, 환급대상이 아닌 내국물품을 제6조제1항의 장소에 보관하는 때에는 다른 외국물품 등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물류창고 등 반출입 물품의 관리) ① 보세판매장 협의단체의 장이 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내 물류창고를 통합물류창고로 운영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부터 허가(별지 제17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② 통합물류창고 운영인은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된 전체 물품의 재고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입 관리하고,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 후의 물품은 각 보세판매장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물품을 전산에 의하여 보관·관리하는 자동화 보관시설을 갖추고 재고관리가 적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통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보세구역에 물품을 보관한 경우, 화물관리인은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을 구분하여 재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영인은 보세운송절차에 의하여 통합물류창고(지정보세구역을 포함한다)와 보세판매장간에 장치된 물품을 반출입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을 통합물류창고(지정보세구역을 포함한다)에 장치된 같은 물품으로 구매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송부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운영인은 통합물류창고를 활용하여 해외 면세점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한

물품을 재반입할 수 있다. 이 때 공급 및 재반입 절차는 제21조의 반송절차와 제6조 판매용 물품의 반입절차에 따른다.

제9조(판매장 진열 및 판매) ①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한 때에는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을 전산관리하고, 세관에 전자문서로 실시간 전송(시내면세점에서 판매된 물품을 보세운송 하는 경우 보세운송 신고 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각 목에서 정하는 대장을 판매장에 비치하고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을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 요구시 물품별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물품이 제7조제1항,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품인 때에는 구분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외교관면세점

가. 판매대장(별지 제4호서식)

나. 면세통관의뢰서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출국장면세점, 입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

가. 제1호가목의 대장

나. 구매자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③ 출국장면세점의 판매물품을 이동판매 방식에 의해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동판매대의 설치장소, 설치기한 및 판매품목 등에 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외교관면세점의 판매절차) ① 운영인이 외교관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외교관 구매자가 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한 면세통관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려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면세통관의뢰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하며 그 승인 한도내에서 분할 판매할 수 있다.

② 운영인은 물품판매시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면세통관신청서의 구매상품란에 상품명세서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외교관 구매자의 확인을 받아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통관신청서의 제출은 수입신고서로 본다.

③ 세관공무원은 면세통관신청서의 우측하단에 통관확인 필증(별표 5)을 날인한 후, 원본을 세관에 비치하고 사본 1부는 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관필 확인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고 세관공무원은 이를 수입신고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운영인은 면세통관신청서의 내용을 면세통관의뢰서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운영인은 주류와 담배에 대하여 면세통관의뢰서 잔량확인대장에 구매승인량과

판매량 및 잔량을 기재하여 분기별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전자상거래에 의한 판매) ①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전자상거래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 운영인이 제1항에 따라 물품판매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상거래 방법에 의한 보세판매장물품판매신고서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한 판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호·제2호의 서류(해당 사이버몰 관련)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2.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사본
3.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서(위탁하는 경우에 한함)
4.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은 운영인과 통신판매업신고인이 같은 법인인 지 여부(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버 몰을 통한 판매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전자상거래 운영방법, 구매절차 및 결제방법이 적정한 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운영인이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대장 또는 전산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운영인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판매를 휴지, 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때에는 미리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변경 신고서(별지 제5호의2서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의 전자상거래에 의한 판매방법이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르거나 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운영인이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물품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⑦ 운영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사이버몰을 중소·중견기업 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판매물품의 보세운송) ① 시내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제11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판매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현품을 판매장에서 인도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서명한 교환권(별지 제10호서식, 전자서명에 의한 전자식

교환권을 포함한다)을 발행·교부하고, 인도장으로 운송한 후 해당 인도장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식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교환권번호를 통보한 후 인도하는 때 여권 등으로 구매자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은 출국하는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제11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 구매한 내국물품, 세관장이 구매내역 등을 고려하여 현장인도를 제한한 여행자가 구매한 내국물품, 환급대상 내국물품을 제외한다)을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매자의 여권과 탑승권·전자티켓 등 예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장인도 제한여부를 확인한 후 인도하여야 하며, 운영인은 판매·인도 즉시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내국물품 현장인도 내역(별지 제3호의8서식)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인은 법 제93조제9호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세관장이 외교관례상 의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원할 경우 판매장에서 현장 인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인은 판매 즉시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내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인은 교환권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는 반송 및 간이보세운송신고서(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 후 수리를 받아 보세운송 신고 건별로 행낭 또는 각종 운반 박스 등에 넣은 후 운영인 책임하에 잠금 또는 봉인을 한 후 인도장으로 보세운송하되, 탑승 항공기 또는 선박 출발(입국장 인도장의 경우 도착을 말한다)예정 2시간 전(인도장 관할 세관장이 보세판매장과 인도장의 거리, 교통상태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1시간 전으로 한다)에 도착되도록 한다. 다만, 각종 운반 박스 등으로 포장되어 잠금이 어려운 경우, 봉인만 한 후 운송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보세운송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재고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내역을 확인하여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의한 운송물품 도착지세관장은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도착확인 및 수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도자가 지정된 인도장의 보세운송 도착확인 및 수리 업무는 인도자에게 위탁한다.

⑥ 출국장면세점 운영인은 제11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으로 판매한 물품 및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판매한 물품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다.

제13조(인도자 지정 등) ① 인도장에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판매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려는 자(이하 “인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자로서 인도장 관할세관장(이하 이조에서 “세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인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가. 제27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협의단체

나.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 법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도자로 지정될 수 없다. 다만,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영 제213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나.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있는 자

② 인도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와 제1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인도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5년의 범위(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남은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임차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도자를 지정하고 그 지정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자의 지정은 법 제172조에 따른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며, 인도자의 지정기간의 갱신 및 지정취소에 대하여는 각각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다.

1.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가. 인도장 운영계획서 1 부

나. 채용 보세사 자격증 사본 각 1 부

다. 그 밖에 세관장이 인도자 지정 및 인도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지정기간 갱신 및 지정내용 변경

가. 인도자 지정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지정신청서 구비한 서류 중 변경된 내역을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지정기간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세관장은 지정기간 갱신신청이 있을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심사하고 5년의 범위(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남은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임차기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간의 갱신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은 승인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인도자는 인도장의 수용능력을 증감하거나 수선 등 시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유와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도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면세물품 인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인도자 지정시까지 그 지정취소를 보류할 수 있다.

가. 제1항제2호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8조에서 정한 경고처분을 1년 내에 3회 이상 받은 때

다. 그 밖의 인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을 위반하거나 관세행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세관장이 인도자 지정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라. 그 밖에 인도자가 실제 인도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인도장의 수용능력 초과로 추가설치가 필요하거나 공항·항만출국장내에서 공간이 협소하여 인도장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세화물 관리와 안전에 이상이 없는 범위내에서 출국장 인접 보세구역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임시인도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판매물품의 인도) ① 인도자는 인도장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의 보세사를 채용하여야 하며 인도업무를 보세사에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인도자는 인도업무를 보조할 직원(이하 “인도보조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인도자는 인도자와 인도보조자의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운영인이 운송한 물품을 인도자에게 인도할 장소를 지정하고 인도자와 인도보조자의 근무 및 물품인도에 관한 사항을 지휘 감독한다.

④ 인도자는 첫 항공편 출발예정시간 1시간 전부터 마지막 항공편이 출발하는 때까지 판매물품 인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업무를 수행할 보세사 및 인도보조자를 근무 배치하여야 한다.

⑤ 인도자는 인도장에 보세운송 물품이 도착된 때에 제12조제4항에 따라 잠금과 봉인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잠금을 개봉하고 보세운송 책임자와 인도자가 판매물품 인수인계서(별지 제12호서식의 반송 및 간이 보세운송 신고서를 판매물품 인수인계서로 고쳐 사용)를 작성하여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보세운송 도착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⑥ 인도자는 제5항에 따라 물품의 인수를 완료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에게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세사는 재고관리시스템의 당해 보세운송에 대하여 도착 확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⑦ 인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1. 구매자로부터 교환권을 회수(전자식 교환권의 경우 확인으로 대체한다)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직접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받고 구매시의 서명이나 인적사항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2. 인도자는 인도보조자에게 인도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인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도자의 인도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품목 및 금액, 구매 선호도 또는 정보분석 등에 의하여 세관공무원의 물품인도 입회대상물품을 지정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인도자는 당일 인도할 물품 중 제3호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시로 세관공무원에게 인도 예상시간을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인도자는 교환권의 여권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출입국사실 등을 조회하여 본인여부 및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며, 인도자는 인도 즉시 해당 물품을 판매한 운영인에게 통보하여 해당 물품의 보세운송신고 내용을 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인도자는 인수자가 교환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구매자의 성명, 여권번호, 출국편명(출국일) 등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구매자와 인수자가 동일인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교환권을 재발행할 수 있다.
- ⑧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인도 사항을 지휘 감독한다.
1.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제7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도자의 인도업무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2. 세관공무원이 제7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는 때에는 지정된 물품 전체에 대하여 확인하며, 물품의 품명, 규격, 구매자의 국적, 여권번호 및 성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⑨ 인도자는 제7항제1호에 따라 회수된 교환권을 정리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한 후 매월 10일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일자 단위로 판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식 교환권은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송부 할 수 있다.
- ⑩ 운영인 및 인도자는 판매한 물품이 미인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영인은 교환권 이면에 인도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문을 인쇄하여야 한다.
 2. 운영인은 미인도물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물품을 송부할 수 있도록 물품판매시 교환권의 연락처 기재여부를 확인하거나 여행안내인 등의 연락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운영인은 판매물품을 구매자의 출·입국일시에 인도될 수 있도록 인도장으로 신속히 운송하여야 한다.
 4. 인도자는 출국장의 잘 보이는 곳에 "인도장"의 표시를 하여 구매자들이 인도장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인도자는 공항·항만 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송 등을 통하여 판매물품 인도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6. 운영인 및 인도자는 각 판매사원과 인도장 근무직원에게 물품인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물품판매시 구매자에게 물품인수 절차에 대한 사전홍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⑪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송부를 의뢰하는 경우

운영인 또는 보세사는 구매자가 작성한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 송부의뢰서(별지 제11호서식) 3부 중 1부를 구매자에게 교부하고, 2부는 판매물품과 함께 구매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법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 또는 항공·해상화물탁송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 세관공무원 입회하에 통관우체국 담당공무원 또는 항공·해상화물 탁송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 송부의뢰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판매장 순찰공무원은 판매물품 중 일부를 발췌하여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한 물품에 대해서는 포장 후 잠금과 세관봉인을 하여야 한다.
 2. 국제우체국에 근무하는 세관공무원은 도착확인시 소포물 포장 및 세관 봉인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국제우체국 소포창구(소포창구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내에 있는 비통관우체국 우편창구를 말한다)까지 호송하여 국제우편물 담당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 공항·항만 세관에 근무하는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도착한 물품의 도착확인시 항공·해상화물송부의뢰서에 의거 포장 및 봉인상태 이상유무를 확인하며,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선·기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⑫ 제11항에 따른 보세운송시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송부의뢰서 2부를 보세운송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1부는 보세운송 도착지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운영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 ⑬ 보세판매장의 물품은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판매내역이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되거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 반송신고(내국물품의 경우 수출신고를 말한다)한 것으로 보며, 인도장 또는 보세판매장에서 구매자에게 인도하거나 국제우체국 또는 공항·항만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신고하여 수리된 때 반송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내국물품의 경우 인도된 때 수출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 ⑭ 인도자는 구매자의 편의와 원활한 인도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2개 이상의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을 하나의 인도장에서 통합하여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통합인도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제9조제1항의 판매내역을 인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보세공장 물품 등의 반출입 절차) ①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보세판매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운송하는 때에는 보세판매장 관할세관 반입신고서와 판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보세운송절차에 의거 운송하여야 한다.

②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 중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가공된 물품으로서 변질, 손상,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물품을 반출하려는 때에는 해당 물품을 보관창고에 구분하여 장치하고 세관장에게 판매물품반출

승인(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영인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물품을 보세판매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세공장 등으로의 보세운송신고는 반출내역신고로 같음한다.

제16조(보세판매장간 물품의 양수도시 업무처리절차 등) ① 보세판매장에 반입된 판매물품을 양수도 계약에 의해 타 보세판매장으로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보세운송 절차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양수도계약서 사본 1부(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경우와 같은 법인내 보세판매장간 양수도시 생략)를 첨부하여 양도·양수물품 보세운송신고(별지 제15호서식)를 하고, 보세운송 신고수리일부 7근무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판매장에 반입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양수도하는 경우의 보세운송 도착보고는 양수인의 반입검사신청으로 같음할 수 있다.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출국하는 공항·항만의 세관으로 보세운송하기 곤란하고 구매자가 출국하는 공항·항만의 인근에 같은 법인의 보세판매장이 있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간 해당 물품이 판매된 것으로 보고 출국지 보세판매장의 같은 물품을 인도장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이때에 해당 물품을 실제로 판매한 보세판매장에서는 구매자에게 교환권을 발급한 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교환권의 사본을 팩스 등의 방법에 의거 출국지 보세판매장으로 송부하고 출국지 보세판매장에서는 같은 사본에 따라 판매물품을 인도장으로 보세운송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재고관리는 물품을 실제로 판매한 보세판매장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출국지 보세판매장에서는 판매한 것으로 정리하여야하며 제14조 제7항제1호에 따라 회수한 교환권을 출국지 보세판매장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대금영수) 판매대금은 원화 또는 외화로 영수할 수 있으며, 외화로 영수 하였을 때에는 환율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절사하고 거스름돈이 없을 때에는 원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미인도 물품의 처리) ① 인도자는 판매물품이 인도장에 반입된 후 5일 이상이 경과하여도 구매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인도 물품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인도자의 입회하에 현품을 행낭 또는 각종 운반용 박스 등에 넣은 후 보세사가 잠금 또는 봉인을 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해당 물품을 판매한 운영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취소 등 구매자의 미인수 의사가 명확한 미인도 물품에 대하여는 인도장 반입 후 5일 경과 전이

라도 운영인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②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인계받은 물품을 해당 보세판매장으로 보세운송신고 하고, 보세운송신고수리일부 7근무일 이내에 해당 보세판매장에 반입하고 미인도 물품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인은 재반입된 미인도 물품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제14조제10항제2호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거 구매자의 해외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물품을 즉시 우편 등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에 재반입된 미인도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미인도물품 해제 신청(별지 제18호서식)을 거쳐 재판매할 수 있다. 다만,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구매자가 구매취소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해당 물품과 같은 물품을 확보할 수 있어 구매자의 물품 인도 요구에 즉시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입 즉시 재판매할 수 있다.

제19조(반품, 분실물 등의 처리) ① 운영인이 구매자로부터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환불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교환·환불하여 줄 수 있으며,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출국장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거나 시내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환된 물품은 제12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인도장에서 인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이 구매자로부터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 요청을 받은 때에 세관의 통관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입국장면세점에서 직접 교환 또는 환불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통관 절차를 거친 후에는 국내우편 및 택배를 통하여 교환·환불을 할 수 있다.

④ 운영인이 판매물품을 교환하여 준 경우에는 그 반품된 물품은 보세판매장 또는 통합물류창고에 재반입 절차를 취하고, 교환하여 주는 물품은 판매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가격상의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병기하여야 하며, 판매물품을 환불하여 준 경우에는 그 반품된 물품은 보세판매장에 재반입 절차를 취하며 반환된 현금은 판매취소로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⑤ 보세판매장 물품이 분실 그 밖의 사유로 현품과 대장상의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족 수량을 월간 매출액과 대비하여 상관례상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는 범위 이내인 때에는 범칙조사 절차없이 해당세액을 추징하고 재고대장에서 공제 처리한다. 다만, 부족물품의 발생사유에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조사 후 통고처분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특허상실에 따른 재고물품의 처리) ①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특허가 상실되었을 때에는 세관장은 즉시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현품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은 특허가 상실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정한 기간 내에 재고물품을 판매, 다른 보세판매장에 양도, 외국으로 반출 또는 수입통관절차에 의거 통관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이고한 물품을 운영인이 이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타 보세판매장에 양도하지 않거나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 절차에 의거 처리한다.

제21조(미판매 재고물품의 처리) ① 운영인은 외국물품을 변질, 고장, 재고과다 그 밖의 유행의 변화에 따라 판매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할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반송: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제출
2. 폐기: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폐기신청

②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폐기하는 물품의 가치가 상당하여 폐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의 공급자(국내공급자와 해외공급자의 국내법인을 포함한다)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의 공급자에게 해당 물품을 반품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화물관리번호 생성 및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하며, 화물관리번호가 생성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재고관리시스템에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운영인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보세판매장 물

품의 반출입에 따른 신고, 신청 및 업무사항에 대한 보고 등은 전자문서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 등에 대하여 검사·감시·감독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보세판매장 물품관리와 관련하여 재고관리시스템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업무감독 및 협의단체

제23조(세관장의 업무감독) ① 세관장은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된 판매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운영인의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실시조사 등의 방법으로 규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판매물품 재고관리, 업무사항 등의 관리에 관한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회계연도 종료 4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 제출한다.

1. 보세판매장 현황(대표자, 임원, 판촉사원, 매장, 보관창고 등)
2. 판매물품 재고관리(반출, 반입, 미인도, 양수도 등)
3. 구매자 구매한도 및 출국자여부 관리
4.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현황 전산관리(구매대장, 판매대장)
5. 판매물품 교환권 관리(구매자 직접서명, 인적사항 대조확인 등)
6. 반출입물품 보세운송관리(인도장,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
7. 반품, 교환, 환불시 물품관리
8. 회계감사보고서
9. 특허신청 공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현황(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별 자체점검)과 그 밖의 제28조의 제재규정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의 운영 및 관리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표 등의 심사결과 보세판매장 물품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표를 반기 1회 재고조사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보세판매장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라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매 반기별로 1회 이상 보세판매장의 판매량, 외국반출현황, 재고량 및 제28조의 행정제재 규정에 해당하는 각 항목의 운영 실태 및 특허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이하 “재고조사”라 한다)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고조사의 횟수 및 그 항목을 조정하여 조

사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후 결산기준일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결산기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⑤ 세관장이 제4항의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세관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특정 품목 및 업무사항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조사반을 지명하고 7근무일 이내의 조사기간을 지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재고조사 시 필요한 경우 법 제266조에 따라 보세판매장운영과 관련한 계약서, 판매대장, 송객수수료 지급내역 등 그 밖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재고조사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를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4조(담당공무원의 임무) ①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의 관리감독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세판매장을 순회하면서 세관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된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보세판매장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검사
2. 반입검사신청한 물품의 검사
3. 반입물품을 보관창고에 진열하는 업무의 감독
4. 판매물품 및 미인도물품의 보세운송 행낭의 봉인·잠금 및 이상유무 확인
5. 보관창고와 매장간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확인과 관리대장의 확인
6. 외교관면세점의 외교부장관 승인수량과 판매잔량의 확인
7. 보세운송 신고 및 도착보고 물품의 확인·검사
8. 인도자의 업무감독 및 인도장 인도물품의 입회·확인
9. 인도장이 지정되지 않은 출국장의 구매물품 인도에 관한 업무
10. 보세판매장 물품의 반출입, 판매 및 인도에 관한 대장 등의 기록 확인
11. 운영인과 그 종업원에 대한 세관업무의 지휘 감독
12.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제25조(보세사의 임무) ① 보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은 운영인이 하여야 한다.

1. 반입물품의 보관창고 장치 및 보관
2. 보세판매장 물품 반출입 및 미인도 관련 대장의 작성
3. 보세운송 물품의 확인 및 이상 보고 및 도착확인 등록
4. 보관창고와 매장간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확인
5. 보세운송 행낭의 잠금 및 봉인과 이상유무 확인과 이상보고
6. 세관봉인대의 봉인·잠금 및 관리
7. 그 밖에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세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운영인 및 보세사는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와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세관장의 보고사항)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그 사실 또는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특허 및 특허 갱신한 경우
2.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가 취소 또는 상실된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라 집행한 경우

제27조(보세판매장 협의단체) ① 제2조제14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은 설치·운영을 할 수 없다.

1. 보세판매장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제안
2. 보세판매장 반출입 물품의 물류관리
3. 보세판매장 판매물품 인도사업
4. 보세판매장 종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협의단체의 장은 운영인의 상거래질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며, 자율규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세관장의 행정처분을 건의할 수 있다.

1. 국가위신과 이익을 손상하는 행위
2. 부당한 가격을 받는 행위
3. 과당경쟁 또는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4. 그 밖에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보세판매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③ 협의단체의 장은 제3조제10항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중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8조(행정제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의 횡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 횡수로 산정한다.

1. 제3조제4항제2호, 제3호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7조제4항, 제11조제5항, 제14조제10항을 위반한 때
2. 제9조제1항 실시간 전송을 하지 아니한 때 및 제2항에 따른 대장과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환권에 구매자 인적사항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
3. 제12조제4항에 따라 판매물품의 인도장 도착규정을 위반한 때
4. 인도자가 제14조제7항 각 호를 위반한 때
5. 보세사가 제25조에 따른 보세사의 임무를 소홀히 한 때
6. 보세판매장 또는 통합물류창고 등의 재고와 재고관리시스템의 재고가 불일치하는 때
7. 제19조제1항의 절차에서 제12조제3항의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그 절차를 위반한 때
8. 운영인 또는 인도자가 세관장의 즉시 시정 요구사항을 위반한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고 횡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 횡수로 산정한다.

1.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항제1호,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14조제6항·제9항·제11항 및 제12항, 제15조,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3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 보고, 교육의무 등을 하지 아니한 때
3. 과실로 제5조를 위반한 때
4. 제9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른 구매자 인적사항을 전산관리 하지 아니한 때
5.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판매한 때
6. 제11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인이 현장인도가 제한된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한 경우
8.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장인도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9. 인도자 및 인도보조자가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10. 제21조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송, 폐기 또는 반출한 때
11.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협의단체의 행정처분 건의가 있는 때

12.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때

13. 운영인이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장에 판매물품의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7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 때
2.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때
3. 고의로 제5조를 위반한 때
4.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한 물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인도한 때
5. 제12조제4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잠금 또는 봉인 없이 보세운송한 때
6. 제19조의 절차에서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그 절차를 위반한 때
7.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고의로 위반한 때
8. 운영인이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물품의 판매 및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운영인의 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이 해당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를 위반한 때
2. 법 제17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세점에서 판매금지품목을 판매한 때
4. 제11조를 위반하여 운영인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행위를 한 때
5. 제23조와 관련하여 정기 재고조사 시 판매대장 등 필요서류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
6. 제3항제1호부터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고의로 위반한 때

⑤ 세관장은 운영인의 법규 위반사항이 법 제27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행정처분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9조(청문) ① 세관장은 제28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법 제328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전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운영인에게 통보하여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운영인에게 청문절차를 통보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에서

정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인이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2.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인 경우
3. 관세행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

제30조(서류의 보관) ① 운영인은 물품반입검사신청필증(구비서류 포함), 보세운송 신고필증 및 교환권 등 판매물품 반출입과 판매에 관한 자료를 영 제3조에 정한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영에 규정되지 않은 자료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자료보관매체(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그 밖의 전산매체)에 보관할 수 있다.

제31조(준용규정) ① 특허보세구역 및 보세화물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및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② 제6조제4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시의 신고서 처리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③ 이 고시에 따라 반송하는 물품의 반송절차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④ 법 제17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32조(관할세관 조정)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4항 및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에 따라 서울세관장에게 안양세관 및 구로지원센터의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의 반출입 관리 등을 수행하게 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고시 제2023-00호, '23. 1. 0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점 창고 반입 전 판매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관련 전산시스템이 개선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반입물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관련 전산시스템이 개선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시 제2022-45호, '22. 9. 6.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시 제2022-12호, '22. 3. 18.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시 제2021-76호, '21. 12. 28.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시 제2020-35호, '20. 10. 6.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시 제2020-23호, '20. 7. 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관세법 제106조의2의 시행일인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국장 인도장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 제3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5조제4항 후단, 제12조4항 및 제6항, 제14조제10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시 제2019-54호, '19. 12. 5.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시 제2019-23호, 2019. 5.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제4항제2호 물품의 경우 제7조제1항 전자문서 방식에 의한 반입신고 전산시스템 구축시까지 제1호서식의 보세판매장물품반입신고서의 서식으로

로 할 수 있으며, 제9조에 의한 구매자 인적사항과 판매사항의 실시간 전송은 전산시스템 구축 시까지 구매자의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 기록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은 제외한다)

부칙<고시 제2017-75호, 2017. 12.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지 제3-2호, 제3-7호, 제5-1호의 개정 서식은 2018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3-2호 서식은 종전의 서식(관세청 고시 제2016-47호(2016.8.12.)호의 제7-2호 서식)을 사용한다.

부칙<고시 제2016-47호, 2016. 8.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신규 특허 또는 특허 갱신하는 운영인부터 적용하며, 기존 운영인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고시 제2015-23호, '15. 7. 1>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시 제2015-06호, '15. 1.27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4-109호, '14. 11. 20 >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시 제2014-35호, '14. 3.12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시 제2012-36호, '12.10.14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산품 매장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내 면세점 운영인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매장면적의 30%이상 또는 660㎡이상 국산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장면적의 40%이상 또는 825㎡이상 국산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고시 제2011- 47호, '11.11.3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고시 제2011- 14호, '11.3.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시 제2010- 106호, '10.7.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고시 제2010- 29호, '10.2.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시 제2009- 120호, '09.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준) 제6조의3 제3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고시 시행전의 부산 및 기타지역의 외국인 입국자의 지역별 증가수 산정이 필요한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고시 제2009- 47호, '09.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시 제2008- 26호, '08.8.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고시 제2008-5호, '08.1.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준) ①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기준 적용일은 2006년도 자료에 근거한다.

② 제6조의3 및 제9조의2의 자료의 근거는 관세청 전산시스템의 통계자료에 의한다.

제3조(시내면세매점 특허기간 갱신에 관한 경과규정) ① 현행 시내면세매점의 특허만료일이 2010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내면세매점의 특허기간 갱신은 특허만료일부터 5년(임차인 경우에는 임차기간으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내로 한다.

② 현행 시내면세매점의 특허만료일이 2014년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내면세매점의 특허기간 갱신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임차인 경우에는 임차기간으로 하되 5년 이내)내 특허기간동안(신청일이 속하는 달은 제외)의 실적이 갱신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현행 시내면세매점의 특허기간 갱신에 대하여는 최근 5년의 특허기간 동안의 실적을 적용하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이후의 실적부터 적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현행 시내면세점에 적용되는 특허기간 갱신요건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2013년에 특허만료되는 시내면세매점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신청일이 속하는 달은 제외)까지 3년동안의 실적으로 2013년에 특허기간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2. 2014년에 특허만료되는 시내면세매점의 경우 2010년부터 2014년(신청일이 속하는 달은 제외)까지 4년동안의 실적으로 2014년에 특허기간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3. 2015년에 특허만료되는 시내면세매점의 경우 2010년부터 2015년(신청일이 속하는 달은 제외)까지 5년동안의 실적으로 2015년에 특허기간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고시 제2006-25호, '06.6.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고시 제2005-42호, '05.12.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적용예) ①제14조제4항의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출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간 양수도물품의 반입신고기한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시 제2004-44호, '04.10.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자상거래 방법의 물품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전자상

거래에 의한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운영인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고시 제2001-31호, '01.6.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01.7.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5조제1항의 국산품매장면적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신규특허를 신청한 보세판매장에 한한다.

②제5조제11항에 따라 별지 제24호 서식의 서약서는 고시시행일에 보세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인 및 보세판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원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고시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7조제1항에 따라 교환 및 환불조항은 교환·환불하고자하는 물품가격 총액이 미화 400불초과물품은 고시시행당일 교환 및 환불을 위하여 휴대품 신고 및 유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시 제2001-11호, '01.2.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보세판매장 특허신청의 특례 개정) 고시 제2000-43호 부칙 제1조 단서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되 특허신청 구비서류중 “국유재산사용허가증 사본”은 “시설주와 임대차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필증(단, 3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은 “「전기사업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사용전검사합격증”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고시 제2000-43호, '00.12.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특허신청 및 허가)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2001. 3월 개항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보세판매장을 특허신청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대로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후 1월 이내에 제7조(담보제공)의 개정규정에 의한 담보금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고시 제99-53호, '99.12.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고시 제99-28호, '99. 7.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고시 제98-78호, '98.12.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이 고시 제5조 제6항 단서규정은 1999.1.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고시 제98-49호, '98. 9.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8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고시 제98-14호, '98. 4.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고시 제97-43호, '97.11.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7년 12월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전에 판매한 물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고시 제97-42호, '97.11.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7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고시 제96-34호, '96. 6.24>

이 고시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시 제95-917호, '95. 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사용하던 별지 제4호 서식은 1995년 5월 1일부터 이 고시에 의한 개정 서식을 사용한다.

부칙<고시 제94-878호, '94. 5.23>

(시행일) 이 고시는 199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시 제94-852호, '94. 1.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세판매장 설치.운영특허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세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받아 운영중인 보세판매장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의하여 특허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그 특허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한 특허기간으로 한다.

② 이 세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세판매장 설치.운영특허를 받은 자가 이 세칙 시행후 당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이 만료되어 동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갱신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고시 제93-785호, '93. 4.1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특허기간은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특허(특허기간 갱신을 포함한다)받은 보세판매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고시 제92-762호, '92.12.24>

(시행일) 이 고시는 1993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시 제92-732호, '92. 5.19>

(시행일) 이 고시는 199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시 제91-688호, '91. 6.21>

(시행일) 이 고시는 199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시 제90-657호, '90.12.28>

(시행일) 이 고시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시 제90-640호, '90. 7.11>

이 고시는 1990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에 사용하던 별지 제16호 서식(교환권)은 1990년 9월 30일까지 개정서식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부칙<고시 제89-607호, '89.12.15>

(시행일) 이 고시는 198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항은 1991년 7월 1일 이후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1991년 6월 30일 이전부터 반입한 반입 신고 건별로 이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고시 제89-599호, '89.10.25>

이 고시는 1989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시 제89-597호, '89.10.12>

이 고시는 1989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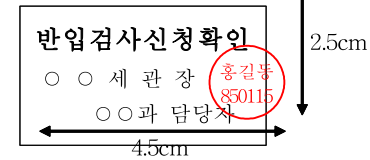
부칙<고시 제89-566호, '89. 3. 9>

(시행일) 이 고시는 1989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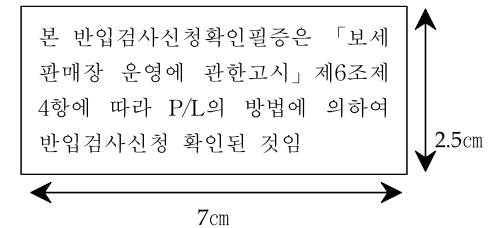
부 칙 <고시 제88-547호, '89. 3. 9>

- (시행일)** 이 고시는 1989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보세판매장 운영요령(관세청고시 제88-527호, '88. 6.27) 및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입대상물품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88-544호, '88.11.15)는 폐지한다.
-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에 보세판매장 설치·운영특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특허기간을 갱신하는 때에는 이 고시 제4조내지 제5조 제1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세판매장 운영요령(관세청고시 제88-527호, '88.6.27) 제4조를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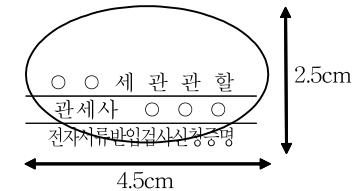
(별표 2) 반입검사신청 확인필증(담당자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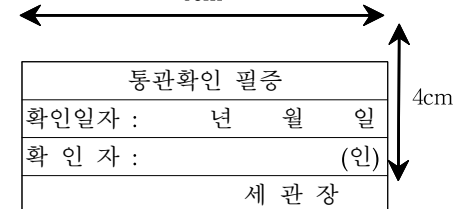
(별표 3) 반입검사P/L신청 확인필증



(별표 4) 전자서류 반입검사신청증명



(별표 5) 외교관면세물품 통관 6cm 필증



(별지 제1호서식)

신고번호: <input type="checkbox"/> 내국물품 <input type="checkbox"/> 외국물품										처리기간	
보세판매장물품반입신고서										1일	
①보세판매장명			②보세구역부호			③반입년월일					
④ 일련 번호	※ ⑤화물관리번호				⑥ B/L번호	⑦ 품명	⑧포장명세			⑨ 비고	
	구분	MRN	MSN	HSN			단위	개수	중량(kg)		
보세운송사항						「관세법」 제1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보세판매장물품 반입신고를 합니다.					
⑧ 출발지 및 목적지:						20 신청인 (인) 세관장 귀하					
⑨ 운송기간:											
⑩ 운송인:											
⑪ 세관직원 확인란:											

※ 1. 화물관리번호는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구분란에 I로 기록하며, 적재 화물목록관리번호(MRN), MASTER B/L 일련번호 및 HOUSE B/L 일련번호를 기록한다.
 2. 국내 타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구분란에 L를 기록하고, 비고란에 타보세구역반출승인번호를 기록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청번호: 판매물품 반입검사 신청기간 연장 신청(승인)서										처리기간	
										1일	
①보세판매장명			②보세구역부호								
③ 일련 번호	④ 반입 년월일	⑤화물관리번호			⑥ B/L번호	⑦ 품명	⑧ 금액(\$)	⑨ 반입검사기한일			
		MRN	MSN	HSN							
반입검사 신청기간 연장신청 내역											
⑩ 신청일											
⑪ 연장사유											
「관세법」 제1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세판매장물품 반입검사 신청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관세법」 제1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세판매장물품 반입검사 신청기간 연장을 승인합니다.					
20 신청인 (인) ○ ○ 세관장 귀하						20 ○ ○ 세관장 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3서식)

업 무 사 항 보 고 서

보세판매장별 면적현황

____년 ____월분

(단위 : m²)

①보세판매장명	②특허 면적 (④+⑨+⑩)	③판매장면적					⑩창고 면적
		④전체매장 (⑤+⑥)	⑤외국산품 매장	⑥국산품매장		⑨공용 면적	
				⑦대기업 제품 매장	⑧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제품은 제품브랜드 소유, 제조·가공 여부에 따라 구분함

(별지 제3호의4서식)

업 무 사 항 보 고 서

국적별 판매현황

____년 ____월분

①보세판매장명	②코드	③국적	④인원	외국산품		내국물품	
				⑤미화	⑥원화	⑦미화	⑧원화
	1	한국					
	2	중국					
	3	일본					
	4	미국					
	5	대만					
	6	기타					
	합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판매금액은 타 서식의 판매금액과 동일해야 함

보세판매장 근무직원 현황 및 변경사항

1. 전월 현황

(단위 : 명)

보세판매장명	총 계			관촉인원		물류인원		사무인원		기타		보세사 소속 직원
	계	소속 직원	비소속 직원	소속 직원	비소속 직원	소속 직원	비소속 직원	소속 직원	비소속 직원	소속 직원	비소속 직원	

작성요령 : 소속직원은 보세판매장 법인에 소속된 직원, 비소속직원은 타 법인에 소속된 직원

2. 입사(전입) 현황

(단위 : 명)

보세판매장명	총 계			관촉인원		물류인원		사무인원		기타		보세사 소속 직원
	계	소속 직원	비소속 직원	소속 직원	비소속 직원	소속 직원	비소속 직원	소속 직원	비소속 직원	소속 직원	비소속 직원	

3. 퇴사(전출) 현황

(단위 : 명)

보세판매장명	총 계			관촉인원		물류인원		사무인원		기타		보세사 소속 직원
	계	소속 직원	비소속 직원	소속 직원	비소속 직원	소속 직원	비소속 직원	소속 직원	비소속 직원	소속 직원	비소속 직원	

4. 현재 현황

(단위 : 명)

보세판매장명	총 계			관촉인원		물류인원		사무인원		기타		보세사 소속 직원
	계	소속 직원	비소속 직원	소속 직원	비소속 직원	소속 직원	비소속 직원	소속 직원	비소속 직원	소속 직원	비소속 직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시내면세점 내국물품 현장인도 판매내역

① 보세판매장명	② 판매일시	구매자 인적사항				판매물품						판매금액		인도방법		출국정보			
		③ 국적	④ 여권번호	⑤ 성명	⑥ 생년월일	⑦ 품목코드	⑧ HS부호	⑨ 품명	⑩ 규격	⑪ 단가	⑫ 수량	⑬ 미화(\$)	⑭ 원화(₩)	⑮ 현장인도	⑯ 항공·해상	⑰ 항공·해상	⑱ 출국예정일시	⑲ 선(기)편명	

※ ⑦ 품목코드 : 1.화장품, 2.향수, 3.가방류, 4.시계, 5.주류, 6.담배, 7.귀금속류, 8.의류, 9.인홍삼류, 10.안경(선글라스)류, 11.전자제품, 12.식품류, 13.민예품, 14.신발류, 15.기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앞면)

발급번호 _____	발급일자 _____
교 환 권	
구매자 성명 (서명) _____	생년월일 _____
국적 및 여권번호 _____	출국/입국예정일시 _____
전화번호 _____	선(기)편명 _____

코드번호	품명 및 규격	단가(\$)	수량	금액(\$)

○ ○ 보 세 판 매 장 인
(전화번호 ○ ○ ○ - ○ ○ ○ ○)

190mm×14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면 기재사항)

(별지 제10호 서식 뒷면)

현 품 인 수 도 사 항			
인 수 도 일 시	구매자 인수서명	인도취급자	세 관 확 인

1. 본권은 출국/입국 시 ○○공항 출국장/입국장 보세구역 내에 있는 보세판매장의 인도장에서 현품과 교환한다.
2. 출국수속 시 본권을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 주십시오.
3. 본권은 재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분실 또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4. 구매물품은 양도가 되지 않으므로 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 만약 본권에 대하여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폐사 매장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기재사항은 보세판매장 실정에 맞게 문구를 정정 가감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 서식)

국제우편(항공·해상화물) 송부의뢰서 REQUEST FOR INTERNATIONAL PARCEL POST(AIR·SEA CARGO) DELIVERY SERVICE								
발급번호 : _____ Issuance No. _____								
귀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아래물품을 국제우편(항공·해상화물) 송부방식에 의거 인도하여 I hereby request International Parcel Post(Air·Sea Cargo) Delivery Service of the following merchandise 주시기 바랍니다. purchased at your duty-free shop.								
_____년 _____월 _____일 Year Month Day								
의뢰인(출국인) Requester ①국적 Nationality ②주소 Address ③성명 (서명) Name (Signature) ④여권번호 Passport No. ⑤입국년월일 Date of Entry ⑥출국예정일 Date of Departure	판매자 Seller ⑦상호 Name of the Shop ⑧주소 Address ⑨전화번호 Phone No.							
국 제 우 편 (항공·해상화물) 송 부 의뢰 물 품 내역 Description of Merchandise								
⑩일련번호 Number	⑪구매일자 Date of Purchase	⑫품명 Item Description	⑬규격 Size/Style	⑭단가(\$) Unit Price	⑮수량 Quantity	⑯금액(\$) Amount	⑰송부예정일 Expected Shipping Date	⑱비고 Remark
※ 아래는 판매자 및 세관공무원이 기재하는 란입니다. The following section is for Sellers and Customs Officers only.								
보세운송신고	신고번호 신고일자 신고인	보세운송승인 직급 성명 ㉑	송인일자 담당자 직급 성명 ㉑					
보세운송도착확인	확인일자 확인자 직급 성명 ㉑	국제우편송부 (항공·해상화물)	송부일자 국제우편(항공·해상화물) 접수번호 송부(선·기적)확인 세관공무원 직급 성명 ㉑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갑지)

반 송 및 간 이 보 세 운 송 신 고 서										처리기간		
										1일		
①신고인(소재지, 업체명, 대표자성명)					②신고번호							
					③신고일자							
					④승인일자							
보 세 운 송 물 품 내 역												
⑤ 일련 번호	⑥ 교환권 번호	⑦ 구매자 성명	⑧ 품명	⑨ 규격	⑩ 단가(\$)	⑪ 수량	⑫ 금액(\$)	⑬ 인도일시	⑭ 비고			
⑮운송목적지							⑯발송확인		일자	직급	성명	인
⑰운송경유지							⑱출발지보세운송업체					
							⑲경유지보세운송업체					
⑳운송기간							㉑도착확인		일자	직급	성명	인
㉒인도확인		일자:		직급 :		성명 :		인				
㉓세관기재란 (봉인및차량번호등)												
㉔첨부서류							㉕접수인		㉖승인인			

(별지 제12호 서식) (을지)

반 송 및 간 이 보 세 운 송 신 고 서										①신고번호					
										②신고일자					
(을 지)										③신고서		업종		매	
④ 일련번호	⑤ 교환권 번호	⑥ 구매자 성명	⑦ 품명	⑧ 규격	⑨ 단가(\$)	⑩ 수량	⑪ 금액(\$)	⑫ 인도일시	⑬ 비고						
㉔세관기재란												⑮ 접수인		⑯ 승인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보세판매장의 수용능력 증감등 공사신청(승인)서				처리기간	
				2일	
보세구역명					
신	변경전 특허면적(m ²)	수입품매장	국산품매장		보관창고
			대기업	중소중견	
청	변경후 특허면적(m ²)	수입품매장	국산품매장		보관창고
			대기업	중소중견	
내					
					신청사유
「관세법」 제1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 제1항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수용능력 증감등 공사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관세법」 제1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 제1항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수용능력 증감등 공사를 승인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0년 월 일 ○○세관장 직인			
○○세관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 공사내역서 및 관계도면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번호 :						
① 신청자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② 공급자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③ 물품의 종류		1. 외국물품 2. 보세공장 등 공급물품 3. 환급대상내국물품 4. 비환급대상내국물품				
④ 반출목적						
⑤ 반출지 또는 보세구역						
⑥ 반출사유						
반출물품내역						
⑦ HSK	⑧ 품명	⑨ 규격	⑩ 단가(\$)	⑪ 수량	⑫ 금액(\$)	⑬ 비고
<p>「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물품을 반출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위와 같이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⑭</p> <p style="text-align: center;">세관장 귀하 세관장</p>						
첨부서류 : 반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접수인	승인인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5호 서식)

보세판매장간 양도·양수물품 보세운송신고서						처리기간
신고번호 :						3 일
①신고자(소제지 업체명, 대표자명)		보 세 운 송	⑥보세운송신고자(소제지 업체명, 대표자명)			
②양수자(소제지 업체명, 대표자명)			⑦보세운송번호			
③보세판매장반입일자			⑧통로 및 목적지			
④반입검사 신고번호			⑨기 간			
⑤양수도 사유			⑩발 송 확 인		일자 확인	㉑
		⑪도 착 확 인		일자 확인	㉑	
반 출 물 품 내 역						
⑫물품구분	⑬품 명	⑭규 격	⑮단가(\$)	⑯수 량	⑰금액(\$)	비 고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판매장간 양도·양수물품을 보세운송하고자 신고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신고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㉒			년 월 일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양수도계약서 (채고관리시스템에 의한 경우와 동일법인 내 보세판매장간 양수도시 생략)		수수료 없 음	접수인		승인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6호 서식)

보세판매장 판매물품 인도자 지정 신청(승인)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 업체명		② 대표자	
	③ 주 소			
	④ 법인등록 번호 (전화번호)			
신 청 내 역	⑤ 명 칭		⑥ 위치	<input type="checkbox"/> 출국장 <input type="checkbox"/> 입국장
	⑦ 소재지			
	⑧ 건물의 구조·동수 및 면적			
	⑨ 시설주			
	⑩ 지정기간			
위와 같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제2항에 따라 면세물품 인도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 1. 인도장 운영계획서 1 부. 2. 채용 보세사 자격증 사본 각 1 부. 3. 그 밖에 인도자 지정 및 인도장 관리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7호 서식)

보세판매장 물류창고 운영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8일
신청인	① 법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신청내용	⑥ 보세구역 명칭		⑦ 보세구역 부호	
	⑧ 소재지			
	⑨ 운영인			
	⑩ 건물의구조, 동수와 면적 (매장)			
	⑪ 부대시설의 구조, 동수와 면적 (보관창고)			
	⑫ 장치물품의 종류			
	⑬ 특허기간			
⑭ 허가조건				
<p>「관세법」 제196조제4항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판매장 통합물류창고를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관세청장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관세청장</p>		
첨부서류 1. 보세판매장 물류창고 사업계획서 2. 반출입 물품 관리 전산시스템 설명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 서식)

신청번호:											미인도물품 해제 신청서			처리기간	
														1일	
①신청일자						②신청업체						③장치장소			
미인도물품 해제신청 내역															
④ 일련 번호	⑤ 교환권 번호	⑥ 여권 번호	⑦ 성 명	⑧ 국 적	⑨ 처리 구분	⑩ 구 분	⑪ 품목 번호	⑫ 상품 코드	⑬ 품 명	⑭ 규 격	⑮ 수 량	⑯ 단가 (\$)	⑰ 금액 (\$)		
<p>「관세법」 제1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라 미인도물품 해제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 세관장 귀하</p>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